

2022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미디어콘텐츠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미디어콘텐츠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소재 법인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모집 개요

- 지원대상: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기업 단독 신청 가능)
- 지원규모: 총 8억원 (과제당 최대 2억원/1년)
- 지원분야: 콘텐츠의 소비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미디어콘텐츠와 혁신기술 융·복합 분야
- 지원기준: 시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 (민간현금은 시지원금의 10% 이상 부담)
- 공모유형: 자유공모
- 모집기간: 2022. 3. 24.(목) ~ 2022. 4. 27.(수) 16시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eoul.rnbd.kr>)

[필수 확인 사항]

- 미디어콘텐츠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지원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 과제내용 작성 요망
-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5% 이상 필수(민간부담 현금은 시지원금의 10% 이상)
- 선정 후 시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과제 규모, 사업비 편성내역,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
-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의 70%까지 인건비 반영 가능
- 선정 전·후 허위사실 기재,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참여제한,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
-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붙임]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확인 필수

접수 마감일 전산 폭주로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제 접수를 위해 과제정보, 기업정보, 사업비, 우대사항 등 입력할 내용이 있으므로

사전에 시스템을 확인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영상·음악 등 전통적 콘텐츠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하여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는 서울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사업명: 2022년 미디어콘텐츠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선택)

-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기업 단독 지원 가능)
- ※ 컨소시엄 구성 시 대학, 연구소 중 한 곳 이상 반드시 포함 (협력기관의 소재지 제한 없음)

컨소시엄 예시 : 기업+대학, 기업+연구소, 기업+대학+기업, 기업+연구소+기업, 기업+대학+연구소 등

■ 지원규모: 총 8억원 (과제당 최대 2억원/1년, 4개 과제 내외)

■ 지원분야

- 콘텐츠의 소비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미디어콘텐츠와 혁신기술 융·복합 분야
 - ※ 콘텐츠, 플랫폼, 디바이스, 네트워크 등 차세대 DC 산업을 위한 핵심기술, 유통, 인프라 전 분야
 - ※ VR, AR, 메타버스 등 미디어 콘텐츠 관련 핵심기술 분야 중점 지원
 - ※ 미디어콘텐츠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지원 (TLR 6단계 이상)
- [TLR(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 예시]

단계	TRL1	TRL2	TRL3	TRL4	TRL5	TRL6	TRL7	TRL8	TRL9
내용	기본원리	개념정립	실험		시제품	시제품	실용화		양산
	기초실험	개념정립	기본성능 검증	부품/시스템 성능검증	장치/시스템 시제품 제작	시제품 성능평	제품 신뢰성평가	시제품 인증	사업화

■ 지원기준

- 사업기간: 2022. 7. 1. ~ 2022. 6. 30. (1년)
- 시지원금 지원 기준: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시지원금: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25% 이상 (시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필수)

■ 공모유형: 자유공모

■ 신청·접수기간: 2022. 3. 24. (목) ~2022. 4. 27. (수) 16시

2. 신청 자격

■ 주관기관의 자격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 본점 또는 지점(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
 - ※ 사업자등록증 상, 종된 사업장은 지원 불가

■ 협력기관의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지역 제한 없음)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지역 제한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 (지역 제한 없음)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 :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 ※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21. 7. 1. 개정) 참고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붙임1)의 지원제외 대상 참고)

3. 지원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 주관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 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
- 해당 공모사업 내, 주관기관 당 최대 1개 과제 신청 가능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장비구입·시설 구축 등 지양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협약체결 시, 시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사업기간+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사업비 소급 가능)
 -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

■ 지원 기준

-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시지원금) 총 사업비의 75% 이내
 -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지급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민간부담 현금은 시지원금의 10% 이상)

구분	총사업비(가)	시지원금(나)	민간부담금		
			총액(다)	현물(라)	현금(마)
구성 기준	(나)+(다)	(가)의 75% 이하	(가)의 25% 이상	(다)-(마)	(나)의 10% 이상
(예시)	266,667,000	200,000,000	66,667,000	46,667,000	20,000,000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기술개발비 지원
 -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 사업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21. 7. 1. 개정)’ 참고

※ 인건비(현금)는 현금사업비의 최대 70% 이내에서 편성 가능

4.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3~4월)	사전검토 (5월)	선정평가 (5~6월)	심의위원회 (6월)	평가결과 안내 (6월)
SBA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	평가결과 심의·확정	평가결과 안내 및 협약체결
SBA	SBA	SBA	서울특별시	SBA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선정 결과는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이후, 안내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과제책임자 메일 안내)

■ 선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평가 (40)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	15
	기술개발의 타당성	15
	기술개발 추진능력	10
시장성 평가 (60)	사업화 능력	10
	사업화 타당성	25
	시장진입 가능성	25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과제 접수 현황에 따라 서류·발표평가의 단계별 또는 통합 발표평가 진행

※ 코로나-19 확산우려에 따라 필요시 발표자 안전 등을 위해 발표평가를 비대면(온라인)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비대면(온라인) 평가 시,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발표 동영상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접수 : 2022. 3. 24.(목) ~ 4. 27.(수) 16시까지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로그인→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 **신청방법** : SBA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서류 작성	회원가입	온라인 입력 및 파일 업로드	온라인 설문조사	접수 완료 확인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공고문 확인 및 과제 계획서 작성

- 공고문 확인 : SBA R&D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공고 게시글의 첨부 참고)
- 과제 계획서 작성 : 신청기관 과제책임자가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과제계획서 양식을 받아 과제계획서 작성

②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최초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연동되는 사이트(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진행
- ※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 사용 가능
- ※ 과제책임자 개인명의로 과제가 신청되므로, 개인회원 계정의 명의 확인 필수

③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과제책임자 개인아이디로 SBA R&D지원센터 로그인
-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 왼쪽 하단 '종합관리시스템' 클릭 하여 접속
-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 2022년 미디어콘텐츠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클릭
- 기본정보, 과제분류, 참여기관, 참여자, 사업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

◆ 참여기관 등록 방법 (신규 사업 참여일 경우)

- SBA 홈페이지 개인회원 가입 후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좌측 메뉴: 기관정보 → 기관등록 → 신규기관등록 클릭 후 작성

- 첨부파일 란에 과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
- 최종 업로드 후,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

④ 설문조사 진행 (<https://forms.gle/ejFYAmkzh74wDTT8>)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서 식 명	대 상		제 출 형 태
		주 관	협 력	
계획서	과제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한글(HWP)/ 스캔(PDF) 온라인 업로드
붙임 [필수]	[붙임1]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	○	
	[붙임2]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	○	
	[붙임3] 최근 3년 연구개발 과제 수행 현황	○	○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 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비영리기관 제출 불필요)	○	○	
붙임 [해당시]	[붙임4] 연구장비·시설 구입 계획서	○	○	
	우대사항 증빙서류	○		
	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	○	
온라인	설문조사	○		제출 후 팝업/링크

6. 과제 접수 시 주의사항

-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 ③ 과제 신청 관계자(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을 적용함
- ⑤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링크(<https://forms.gle/ejFYAmkzh74wDTT8>)를 통해 제출되는 설문양식을 작성 후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
- ⑥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⑦ [붙임1] 지원제외대상, [붙임2] 우대가점 목록 **필수 확인**

7.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완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주관기관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에 따라 시지원금에 아래 기술료율을 곱하여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 시지원금의 10%
중견기업	사용 시지원금의 20%
대기업	사용 시지원금의 30%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함
-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함
-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 경상기술료 : 성과활용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 경상기술료율 범위: 사용 시지원금의 20%~50%(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5조)
 -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납부 방식, 기술료 감면·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2021. 7. 1.개정)」에 따름

■ 문의처

- 담당자 : SBA R&D사업팀 박정민 (pjm603@sba.kr, 02-2222-3831)

※ 서울산업진흥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콜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붙임1] 지원제외 대상

- ※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과제(부문)책임자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 접수마감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및 선정 이후라도 참여 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및 협약해약 조치

① 접수서류

- 과제계획서 등 제반서류(설문조사 포함) 미제출 및 제출양식 미준수한 경우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 서울형 R&D 지원사업 5년간 참여제한

② 중복성

-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잔여사업기간이 90일 이내인 과제책임자 또는 주관기관 예외
- 접수과제의 내용(기술개발 목표, 방법 등)이 타 사업·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 과제계획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s.go.kr)에서 개별 확인가능
-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산출물이 기 지원·제작·생산·판매중인 제품·서비스 경우

③ 참여율

- 과제(부문)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 과제(부문)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참여율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④ 의무사항

-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과제(부문)책임자 등이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⑤ 신용 및 기업 상태

- 기업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체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
 - ㉡ 체납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 ㉢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관련 문의처 >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따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예외)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예외)

⑥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임2] 우대가점 목록

가점기준 :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가점(최대 5점 내 중복 인정 가능)

- ① 주관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가점 가능)(각 1점)
☞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은 불인정)
- ②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1점)
☞ 증빙서류 : 서울형R&D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 (결과공문: 성공(우수) 표기 과제)
- ③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의 기업 브랜드 대상 관련 수상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1점)
☞ 증빙서류: 상장, 인증서 등 개별 확인서
- ④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은 경우(1점)
☞ 증빙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⑤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 또는 민간 투자 기관으로부터 건당 2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경우(2점)
☞ 증빙서류 : 투자 계약서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금 등기 완료내용 포함 경우)
- ⑥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3개월 이내 기술 개발을 위해 신규채용을 완료한 경우(1점)
☞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한 신규인력)
- ⑦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외 수출 실적을 보유한 경우(2점)
☞ 증빙서류 : ① 직접수출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② 간접수출 -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직·간접 수출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점인정
- ⑧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디지털미디어시티(마포구 상암동) 소재시 (3점)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⑨ 주관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가 코로나19 관련 위기 대응 분야(비대면, 방역 관련 기술 등)인 경우(1점)
☞ 증빙서류: [종합관리시스템] 접수과제 우대사항 입력사항 사유 작성 필수
- ⑩ 주관기관이 코로나19 등 경제악화로 인한 피해 기업일 경우('20년 대비 '21년 비교)(1점)
☞ 증빙서류 : ① [종합관리시스템] 접수과제 우대사항 입력사항 사유
② 증빙서류: 매출감소(2개년도 손익계산서 등), 인력감소(2개년도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 계약취소(계약서 및 취소 공문 등)

※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가점 인정 불가